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10. 2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571,090,200원, 지방교육세 49,149,020원, 농어촌특별세 24,574,5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가. 원고는 2012. 4. 1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C 조성사업 1-1공구' 내 토지 중 [redacted]군 D 외 4필지 34,3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9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5.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이 사건 토지 매매 현황

지구	주소	면적(㎡)	매수가격(원)
C	D	11,450.4	3,257,000,000
	E	18,661.4	5,654,000,000
	F	1,423.4	347,000,000
	G	1,408.3	346,000,000
	H	1,411.9	346,000,000
합계		34,355.4	9,950,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1,090,200원, 지방교육세 49,149,020원, 농어촌특별세 24,574,5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644,813,7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상세 부과·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이 사건 각 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 내역 (단위: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구 분	합 계	본 세	가산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합 계	644,813,730	457,700,000	79,600,000	107,513,730
취득세	571,090,200	398,000,000	79,600,000	93,490,200
지방교육세	49,149,020	39,800,000		9,349,020
농어촌특별세	24,574,510	19,900,000		4,674,510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2014. 4. 18.까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특히 원고의 사업목적이 부동산개발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를 구입한 이후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B의 1-2공구에 대한 토목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착공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B이 공사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의 이례적인 파산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취득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피고로부터 'C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위치: I 일원

○ 시행 기간

- 전체: 2001. 12. ~ 2012. 12.

- 1-1공구: 2001. 12. ~ 2012. 3.

○ 토지이용현황 (단위: ㎡)

구 분	계	1-1공구	1-2공구	구성비(%)	비고
계	206,319.0	44,619.4	161,699.6	100	
관광휴양시설용지	150,898.7	34,355.4	116,543.2	73.1	
공공시설용지	55,420.3	10,264	45,153.3	26.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2)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사업 중 위 1-1공구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하였다.

3) B과 원고 사이에 2012. 4. 19.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매매가격 및 대금)

2) 매매대금은 "을"(원고)의 본 관광지 토목공사 잔여 기성대금으로 대체한다.

제2조(면적 및 정산)

1) 상기 매매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서 장차 환지확정 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소유권 이전)

1) 본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환지 확정처분 후 이행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갑"이 "을"의 기성공사 대금을 변제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하고 본 부동산은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원고 외에 원고와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J'이 존재하는데, 법인등기부에 따른 각 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호	원고	주식회사 J
회사성립연월일	2012. 4. 16.	2010. 12. 17.
자본금	5,000만 원(2018. 8. 2. 5,100만 원으로 변경)	3억 5천만 원
목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펜션업, 유원시설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기타 서비스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임대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2015년 이전까지)	[2012. 4. 16. ~2013. 8. 18.] 대표이사: K, 사내이사: L, 감	[2011. 1. 25. 이전]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사: O [2013. 8. 18. 이후] 대표이사: K(2015. 4. 16. 퇴임), 사내이사: P(2016. 8. 18. 퇴임), 감사: Q(2015. 3. 31. 퇴임)	[2011. 1. 25. ~2013. 2. 18.] 대표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O [2013. 2. 18 ~ 현재] 대표이사: P, 사내이사: K, 감사: 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므로, 피고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2004두741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설립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원고의 본 관광지 토목공사 「잔여 기성대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회사 설립 이전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향후 1-2 공구의 잔여 토목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할 뿐이고, 토목공사 등 건설업은 원고의 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잔여 기성대금」이라는 표현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정산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해석될 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1-1 공구가 준공되었다고 공고된 날인 2012. 4. 16. 설립되었고, 원고의 설립 당시 임원과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당시 임원이 동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약 99억 원이었고, 원고와 B 사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1-2공구의 토목공사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이나 공사 내역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 1-2공구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B은 원고로부터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010년경 설립된 주식회사 J이 원고 설립 이전에 이미 B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외관상 다른 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2012. 4. 이후 유예기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목적사업인 펜션, 호텔 등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2) 원고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로서 건물의 신축만이 이 사건 토지의 직접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개발의 모든 과정이 원고의 사업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역도 제출한 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의 1-1공구를 나머지 1-2공구와 분리하여 착공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1-1공구 및 1-2공구의 동시 착공만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의 1-2공구의 준공을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1-2공구가 준공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사업 진행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류하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판사 문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7

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